

의안 번호	2198	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1.(금) 안영호 의원 외 5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2. 1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4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안영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개정
 - 재직기간 확대 : 2년 미만 → 5년 미만(안 제12조)
 - 가산 연가일수 : 2일 → 3일(안 별표3)
-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범위 안에서 수당 수령과 연가 전환 중선택 사용 가능 신설(안 제14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공무원 복구규정」 제4조 및 제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